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94호

「도로법」 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익산~평택선, 익산~평택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17호, 173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94.00km)

기간	2024년 12월 10일부터 계속
----	--------------------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길 111

☎ 1555-6025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위치도



1단계  
(부여~평택)  
L=94.0km

사업구간  
L=137.4km

2단계  
(익산~부여)  
L=43.4km

전북 익산시 왕궁면

충남 부여군 규암면